

大學教育의 自律性을 위한 제언

許 平 吉

(釜山大 一般社會教育科)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민주화와 통일이며, 시급한 현안문제는 국제 빙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가치체계의 정립과 국제 무역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임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과제들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낡은 의식이나 사고방식은 물론 각 부분의 政策方向이 대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부분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국제 무역 경쟁력의 재고는 자본축적의 논리 일변도에서 富의 공정분배로의 전환(이것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온다), 수출산업·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논리 일변도에서 산업간·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국가권력의 기업통제논리로부터 기업활동 자유로의 전환, 단순 가공조립제품 생산과 외국상품의 모방에서 技術개발을 통한 창조적 상품 개발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중의 단 하나도 의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은 물론 정책의 일대 전환이 없이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당장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21세기의 주

역이 될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특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작업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의 教育現實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정권안보를 위한 교육통제의 논리가 지배해 왔고, 교육정책이 권력의 요구에 응해 수립·집행되어 온 결과로 인한 교육정책의 비일관성은 교육의 부재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입시를 위한 각급학교 교육의 예비교육화, 각 지역 노동시장의 현실적 필요와는 동떨어진 획일적 교과내용, 교육행정관료를 통한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생의 통제,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각종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강제력의 행사, 자기 삶의 구체적 현실과 동떨어진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의 암기교육 등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데 해악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적 밝은 삶과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教育政策의 一大轉換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수차례 걸쳐서 열여왔던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교수 제임용제 철폐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토론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향

후 교육정책에서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재구성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2. 教育政策 전환을 위한

教育目標와 方針의 재정립

교육정책의 일대전환을 위한 출발점은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현실적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일일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간을 고도로 抽象化된 觀念의 세계로 끌어 올려 현실적 목표인 민주시민의 像이 떠오를 리 없으며,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대한 그리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 제시가 없이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로 추상화된 觀念의 영상 속에서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역사의식 및 비판정신이 함양될 수 없고 공공생활에 대한 태도형성이 어려워 극단적인 이기적 편의주의에 빠짐으로써 민족과 사회현실을 외면하는 인간을 만들게 될 것이다.

현실적 삶의 필요가 창조를 낳고, 현실의 구체적 인식은 자주성 함양의 근원이 아닌가? 따라서 教育의 目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하며, 올바른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의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이상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민족·민주·통일 교육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教育方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①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고, 평등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존중하며, 공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육을 한다.

② 건전한 사고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노력교육을 한다.

③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삶을 누리게 한다.

④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한다.

⑤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그러면서도 동시에 협동과 공동체적 심성을 가르는 교육을 한다.

⑥ 민족적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게 한다.

⑦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계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3. 大學教育의 自律性을 위한

철학적·법적 기초

자율성이란 자기의식적으로 사유하는 인간능력, 자기반성적이며 자기결정적 존재로서의 인간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사생활과 공공생활에 있어 서로 다른 여러 행위 경로를 숙고·판단·선택·이행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①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본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특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창조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회구성원은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③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결사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자원의 사용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는 확대되어야 한다.

즉, 사회구성원은 자기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산출하고 제약하는 틀을 규정하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大學教育의 自律性이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대내적 민주화를 의미한다. 제도적으로는 교육부 및 사학재단으로부터의 독립,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그리고 총·학장 권한의 통제를 위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와 단

과대학 및 단위학과 중심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러한 요구는 종래 교육부(이전의 문교부)와 사학재단—총·학장—보직교수—교수—학생으로 이어지는 저휘·명령 체계가 대학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교수의 권위를 실추시킨 요인이라는 대학인들의 자기반성에서 나온 대안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2조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그리고 제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과 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규정은 대학의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조항을 명시적인 근거로 하여 大學의 自治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학문연구 및 교육의 자유와 그를 위한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대학 교원의 신분보장이 하위법에 의해 구체화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대학에 관한 기본법률로는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을 들 수 있고, 그 하위의 대통령령으로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국립대학설치령, 대학설치기준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헌법상의 대학교육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대학의 效率的 統制裝置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자율성의 주체로서의 교원의 신분보장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분을 위협하여 權力意志에 順從하는 길들이기에 역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본 논자가 갖는 솔직한 평가이다.

대학교육정책 일반과 세부지침이 교육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관계 제법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구체적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정책내용은 구체적 정책집행의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규정을 개폐 또는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교육관계 제법들의 구체적 조항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4. 大學教育의 自律性을 위한 制度的 方案

1) 教育부와 사학재단으로부터의 獨立性

교육법 제6조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에 규정된 자율성의 보장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국가의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모순 정도에서 유추해 보면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학원사찰과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모든 교육기관의 자치적 운영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권력 기타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 학원사찰 등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로 고쳐져야 한다.

國家權力的 教育統制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학교의 폐쇄령(교육법 제91조), 학생정원(교육법 제109조의 2항), 대학입학방법(동법 제111조의 2항), 학칙인가원(동법 시행령 제55, 56조) 등이다. 특히 학교의 폐쇄령은 사학재단을 위협하여 충실한 정권의 시너로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폐쇄령과 같은 제도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또는 파시즘체제하에서나 존재이유를 가지는 극단적 교육통제정책의 산물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악법은 즉시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정원과 대학입학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을 유효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학학생정원의 증감은 사학재단의 입장에서는 재정수입원의 한 원천이기 때문에 권력과 관계당국의 어떠한 요구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학생정원의 증감문제는 교육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동문회,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발전협의체(가칭)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당해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노동시장과 당해 대학의 교육시설용량 및 교수공급능력에 가장 알맞은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고 교육당국은 조정과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칙은 대학의 최고자치규범이므로 시행령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법에 규정

되어 마땅하고, 인가사항으로 규제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당국은 지도만 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교수회를 통한 학칙 내용을 실질적으로는 시행하지만, 교육부의 인가를 득하지 못함으로써 대학당국과 교수회와의 관계가 갈등관계로 치닫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당국이 권위를 상실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인사문제는 국가와 자본이 대학과 대학교수를 동시에 통제하는 유력한 무기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장·학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수 등의 임용(동법 제25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사립학교법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동법 제21조), 교원인사위원회(동법 제53조의 3) 등의 규정내용은 대학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교수의 대학운영 참여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교수의 신분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조항들은 권력과 자본이 교육행정관료를 통한 大學의 垂直支配를 관철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면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총장·학장의 임용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수의 총의를 대표하는 당해 교수회에서 선출한 최고 득표자를 교수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총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2인 이상 추천제는 자칫 대학교수들의 총의를 무시하게 되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차점득표자가 총장임명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해 대학은 위계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교수사회는 극도의 불신으로 대학운영은 일시적 마비상태가 예상된다. 총장선출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

그리고 교수 등의 임용은 당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보고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과 사학재단이 직접 임용한다는 것은 인사권을 통한 대학교수의 수직통제를 하겠다는 정책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교수를 권력과 자본의 통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권력의 지배의 정당성이 취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의하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사립대학의 교수를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사찰할 수 있는 악용의 여지가 크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2) 대학교육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敎員의 身分保障

가. 服務規程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53조 4항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즉, 소속기관장 앞에서의 선서, 성실의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 외국정부로부터의 영예 또는 중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 금지 등이다. 다만 정치활동금지에 관해서는 1980년 정당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 교육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금지는 모든 교원의 노동3권과 집단행위를 일반적 공무원과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정치참여의 포괄성이 민주화의 지표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정치참여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볼 때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

서 교육정책의 방향은 교육공무원 일반에게 정치운동이 허용되어야 하고, 노동 3권의 인정(단, 단체행동권의 제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나. 敎授再任用制

교수재임용제는 대학교수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기간만료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91년의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1990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용기간을 대통령령과 재단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학에 있어서는 정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임용 대상이며(서울대는 부교수 이상 정년보장),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정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수가 재임용 대상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임용기간은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의 경우 전강 2년, 조교수 3년, 부교수 5년, 그리고 교수는 정년보장으로 되어 있다(서울대의 경우 부교수 이상 정년보장). 사립대학의 경우 심한 곳은 전강 6개월, 정교수 5년인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재임용제도의 실태를 보면 1975년 제정된 이래 1988년까지 무려 271명의 교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되었고, 6공 들어서만도 41명이나 재임용 탈락되었다. 특히 1990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수임면권이 재단으로 넘어간 이래 사립대학의 재임용 탈락자가 29명이나 되는 등 부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탈락된 교수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재단비판과 학원민주화에 앞장 선 교수들에 대한 보복 차원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재임용제로 인한 신분보장의 약화는 심각한 지점에 와 있다. 임용기간을 단기화함으로써 임기중의 신분보장이란 명목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교수재임용제도의 명시적 입법의도는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이다. 교수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교수재임용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당시의 유신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통제와 길들이기가 진정한 입법의도라고 보여진다. 교수재임용제는 대학교수를 일종의 私用 근로자화함으로써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근로자보다도 신분

보장에 있어서 취약하게 만들고, 그 결과 교수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 및 언론의 자유, 특히 비판적 탐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 재임용제가 노리는 효과에 비추어 볼 때 교수의 신분상의 불안정은 연구분위기 조성에도 역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진정으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경쟁적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우수 논문 포상제, 해외학술 교류의 확대, 연구비의 인상, 연구서적의 구입증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교수는 전문성을 자기 존재이유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연구의 여건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敎授懲戒의 合理的 基準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재단의 임용권 남용의 소지가 짙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재단의 전횡이 우려되며 교수의 신분을 보장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의 면직과 직위의 해제 사유에 관한 몇몇 항목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임면권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사학재단의 교수통제를 위한 악용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②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③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 ④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⑤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여기에서 2, 3, 4호의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여 임면권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 악용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이 기준은 재단의 비리나 학사운영의 전횡을 비판하기

나 비난하는 교수와 학내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실천하려는 진보적 교수들을 제거하는 데에 그리고 재단에 충성스러운 교수 길들이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든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교무회의 또는 교수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직위의 해제(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사유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라는 기준은 참으로 모호하기 짝이 없어 임면권자가 교수의 직위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학재단의 자의적 평가를 고려해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원 징계위원회의 설치(동법 제62조) 규정에서도 위원구성은 교무회의 또는 교수회에서 선출한 2분의 1 이상의 교원이 들어가야 된다.

면직과 직위의 해제를 꼭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선의 방법으로 면직과 직위의 해제 대상인 교수가 근무하는 당해 학과의 전체교수의 합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단위학과 중심의 대학운영이라는 대학자치의 분권의 원리에도 합당할 것이다.

라. 講師의 身分保障

교육법시행령상으로 시간강사라는 지위가 있으나, 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는 전임강사만 있을 뿐 시간강사에 관한 법적 지위나 신분보장은 전혀 없다. 현재의 대학 현실에서 시간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몫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원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강사의 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하도록 교육법에 명시하고, 교수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전임교수에 준하도록 하여 강사연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현재 3만여 명이 넘는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육은 위축되되, 신분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교육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된 영역임을 말해준다. 미래의 교수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을 고

려해서 시급히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며, 그 제도적 보장을 위해 교원의 권리를 교육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원은 전문직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교육발전과 교직원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행사될 수 있다.”는 오지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히 요청된다.

5. 大學 自治

1) 총·학장 권한 견제를 위한

教授會의 議決機構化

현행 교육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국립대에 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개정사립학교법 26조의 2 항에는 사립대에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장이 평의원을 위부인사까지 포함하여 임의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수들의 대표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은 교수회(또는 교수협의회, 평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등)을 두고 있고, 이 기구를 통해 총·학장의 선출 등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일부 대학교에서는 의결)하고 있다. 현재 이 기구가 교수들의 당해 대학 대의 기구로서 학칙 등의 제규정의 개폐, 총·학장 선출 등의 인사, 예·결산 심의, 교과과정의 개편 등 대학운영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기구의 수립이 확정될 때까지라도 교수회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포대학의 사례는 좋은 보기이다.

예컨대 당해 대학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는 교수회를 두고 교수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그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그 권한으로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

정 및 개정, 학교의 장의 선출 및 불신임,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예산안 심의 및 결산감사, 기타 학교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교육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대학자치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각 대학은 학칙의 교육부 인가 규정으로 인해 학칙상의 교수회의 위상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대학당국과 교수회와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마찰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의 대학평의원회도 국·공립대학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교수회로 통일해야 마땅할 것이다.

2) 단과대학 및 학과 중심의 學內 分權化

대학교육의 자율성은 단과대학과 학과의 학문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별교수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단과대학과 학과 중심의 학사운영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과편성, 학사운영, 예산편성, 그리고 교수의 임용과 징계에 관한 학과교수회의 심의·의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6. 結論에 대신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

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세계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특히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위한 大學教育政策의 大轉換이 요구된다.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종래의 통제정책으로부터 보장과 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주체들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자의적 침해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의 대내적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權力和 資本으로부터의 獨立을 위해서는 대학의 실질적 주체인 교수의 신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 직위해제, 면직, 해임 등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사항은 보고사항으로 대체입법되어야 하며, 당국은 합리적 조정과 지도 및 장려의 역할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의 對內的 民主化를 위해서는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수회의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수회가 학칙을 비롯한 대학운영의 중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학내 분권화를 위해 단과대학과 학과교수회 중심의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대학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망한다. ■